

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순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13
----------	------

발의일 : 2015. 10. .

발의자 : 김순희·신희근·서정택·양창원·강한옥·전갑봉·
김재열·김명기·최정아·김현상·최민규·이봉준·김주은(13명)

1. 제안이유

보다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내 대학생 및 직장인도 제안이 채택되면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안자격의 동작구민에 관내 대학생 및 직장인 등을 포함 (안 제3조제1호)
- 나. 제안심사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변경 (안 제10조제1항)
- 다. 제안심사위원회 회의 횟수를 연 2회 이상에서 연 1회 이상으로 변경 (안 제19조 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, 지방공무원법 제78조
- 나. 예산조치 :
- 다. 합 의 :
- 라. 기 타
 - (1) 개정안 : 별첨
 - (2) 입법예고 :
 - (3) 규제사무 :

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 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 ”를 “ (동작구에 소재한 직장, 학교,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. 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 ” 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 ...연2회 6월과 11월중 ... ”을 “ ... 연 1회 이상 ... ” 으로 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 ...연 2회 이상 ... ” 을 “ ... 연 1회 이상 ... 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정의) (생략)</p> <p>1. “제안”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 ----- ----- -----.</p>	<p>제3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“제안”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(<u>동작구에 소재한 직장, 학교,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.</u> 이하 “구민”이라한다)----- -----.</p>
<p>제10조(채택여부의 결정) ① ----- <u>연2회 6월과 11월중</u> -----.</p>	<p>제10조(채택여부의 결정) ① ----- <u>연 1회 이상</u> -----.</p>
<p>제19조(회의) ① (생략)</p> <p>② ----- <u>연 2회 이상</u> ----- -----.</p>	<p>제19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연 1회 이상</u> ----- -----.</p>